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0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3. 10.
- 라. 회부일자 : 2023. 3. 1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18,317,049천원(일반 695,027,520천원 특별 23,289,52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18,317,049	715,593,915	710,356,657	5,237,258	2,723,134	
일 반 회 계		695,027,520	692,304,386	687,067,128	5,237,258	2,723,134	
특 별 회 계		23,289,529	23,289,529	23,289,529	0	0	
	의료급여기금	590,000	590,000	590,000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591,400	591,400	591,400			
	주 차 장	22,108,129	22,108,129	22,108,129			

4.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

(단위:천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교통건설국		48,545,620	47,532,020	1,013,600	2.13 %
교	통 행정과	1,562,175	1,307,975	254,200	19.43 %
주	차 관리과	32,931,145	32,931,145	0	0.00 %
건	설 행정과	301,468	301,468	0	0.00 %
도	로 과	8,467,943	7,767,943	700,000	9.01 %
치	수 과	5,282,889	5,223,489	59,400	1.14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1회추경(안) ②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 시비 보조금 미반영으로 인한 추가 구비분	162,890	162,890	-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 G밸리 상습정체구간 모범운 전자 배치	54,200	-	54,200
교통개선정책사업	- G밸리 진출교차로 조성 공사비	302,400	102,400	200,000
도로과				
신속한 제설대책	- 도로열선 설치 공사비	1,807,571	1,307,571	500,000
도로시설물 정비	-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비(연간단가)	664,000	464,000	200,000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1회추경(안) ②
치수과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 안양천 공중화장실 CCTV설 치 구비분	310,832	251,432	59,400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최종 예산액	기정액	1차 추경(안)
계				23,289,529	23,289,529	0
1	주차 관리과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	- 바닥교체 공사비 축소로 감액	841,800	891,800	△50,000
2	주차 관리과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	- 무인운영 시스템 1개소 추가 설치	294,800	244,800	50,000

5. 검토의견

○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정액(475억 3,202만원)에서 10억 1,360만원이 증액되어,
485억 4,5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6.76%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가. 교통행정과

기정액(13억 797만원)에서 금회 2억 5,420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G밸리 진출교차로 조성공사비 2억원 증액

나. 도로과

기정액(77억 6,794만원)에서 금회 7억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로열선 설치 5억원, 노후도로 시설 정비 2억원 증액

다. 치수과

기정액(52억 2,234만원)에서 금회 5,94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안양천 공중화장실 CCTV 설치 5,940만원 증액

라.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은

기정액 232억 8,952만원에서

공영주차장 공사비 축소로 5,000만원 감액

무인운영 시스템 1개소 추가 설치 5,000만원 증액

○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및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을 재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